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개정 2021. 2. 5.>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 [別紙第65号書式] <改正2021年2月5日>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二輪自動車届出事項変更届出書

| 접수 번호<br>受付番号       | 접수 일시<br>受付日時     | 발급 일시<br>発行日時                     | 처리 기간 즉시<br>処理期間 即時 |
|---------------------|-------------------|-----------------------------------|---------------------|
| 소유자<br>所有者          | 성명(명칭)<br>氏名 (名称)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br>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                     |
|                     | 주소<br>住所          | (휴대)전화번호<br>(携帯) 電話番号             |                     |
| 이륜자동차번호<br>二輪自動車の番号 |                   |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br>総排気量又は最大定格出力    |                     |
| 변경내용<br>変更内容        | 변경전<br>変更前        |                                   |                     |
|                     | 변경후<br>変更後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01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申請人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出張所長 殿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電子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出張所長が以下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出張所長の確認に同意しないか、又は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確認できない場合は、当該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人が自ら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대표자)  
申請人 (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                                 |                                                                                                                                                            |                    |
|---------------------------------|------------------------------------------------------------------------------------------------------------------------------------------------------------|--------------------|
| 담당공무원<br>확인 사항<br>担当公務員<br>確認事項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br>※ 二輪自動車の使用届出済証                                                                                                                            | 수수료<br>없음<br>手数料なし |
| 첨부서류<br>添付書類                    |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1. 変更届出事項を証明する書類1部<br>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br>2. 二輪自動車のナンバープレート (二輪自動車のナンバープレートに表示されている管轄役所が異なる場合のみ) |                    |

유의사항  
留意事項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 二輪自動車の所有者は、次の事項の変更があった場合はその届出期間内に変更届出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
  -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 使用本拠地又は所有者の氏名(名称)の変更時 : 30日以内
  -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売買 : 15日以内、贈与 : 20日以内、相続 : 相続開始日が属する月の末日から6カ月以内、その他 : その理由が発生した日から15日以内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 上記の事項に違反した場合は、関連する規定に基づき過料が科さ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4条第5項第6号の2)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携帯)電話番号は、届出人の二輪自動車管理に必要な事項に関する案内等の便宜を提供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ご記入いただき変更が生じた場合は管轄登録機関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し、ご本人が望ま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結構です。